

복지 제도 신청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귀 가정의 무궁한 발전과 가족분들의 행복과 안녕을 바랍니다.

우리 서구에서는 관내 주민을 위하여 각종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발굴·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주민 여러분의 신청이 있어야 소득·재산 및 가족의 부양능력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현재 실직이나, 건강문제로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못하시거나, 부양받을 가족이 있음에도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으로 생활이 곤란한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각종 복지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구비할 서류 등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신청 안내 >

○ 집중발굴기간 : 2016. 1월 ~ 2월, 수시

※ 신청기간 이후에도 생활이 어려우신 분은 언제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이외 준비할 구비서류는 상담내용 및 지원할 수 있는 제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문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추가로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검암경서동주민센터 연락처 : 560-3011

2016. 1.

인천광역시서구 검암경서동장



긴급복지지원제도

■ 지원대상 : 위기 상황과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타법우선의 원칙)에 의거, 타 법률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구호 등을 받고 있는 경우 긴급복지 지원되지 않음

<위기사유>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 ① 이혼의 사유로 소득 상실하여 가구원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때
 - ②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 ③ 주소득자의 휴·폐업,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할 때
 - ④ 출소한지 6개월 이내
 - ⑤ 6개월 미만의 초기 노숙의 경우
 - ⑥ 이 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기준

－ 소득기준: 최저생계비의 185%이하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생계,주거, 의료	1,141,969	1,944,438	2,515,422	3,086,408	3,657,394

－ 재산기준 : 1억3,500만원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이하 (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긴급지원대상자 지원 내용 및 지원금액

▶ 생계지원의 지원금액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지원금액	409,000	696,500	901,100	1,105,600	1,310,200

▶ 주거지원의 한도액



가구원 수	1 ~ 2인	3 ~ 4인	5 ~ 6인
지원금액	365,800	607,800	801,700

▶ 의료지원 금액

- 300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지원

▶ 교육지원의 지원금액

구 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204,700	325,900	399,300원 및 수업료(입학금포함)

▶ 그밖의 지원의 한도액

지원종류 (세대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90,800	600,000	750,000	500,000이내

■ 긴급지원 절차

